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45
----------	------

제출일자 : 2024. 8. 23.

제출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 실비 신청 시 사업계획서 및 정관 등 타 구·군에 비해 많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단체에 부담을 주는 점과 해당 서류가 실비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증빙서류 간소화를 통한 자율방범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절차 상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 간소화(안 제5조)

- 제출서류를 ‘방법일지 및 지출 증빙서류’ 및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로 포괄 규정
- 사업계획서 및 단체 정관 등 제출서류 강행규정 삭제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입법예고(2024. 7. 22. ~ 8. 12.) 결과 : 의견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 (7)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방범일지 및 지출 증빙서류
8.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지원절차)</p> <p>① (생 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 2. 자출방법대등의 정관 3.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4.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5.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출결 의서 6. 별지 제4호 서식의 방법일지 7. 별지 제5호 서식의 방법순 찰 등 활동사진 <p><u><신 설></u></p> <p>② (생 략)</p>	<p>제2조(지원절차)</p> <p>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삭 제></u> 2. <u><삭 제></u>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u><삭 제></u> 6. <u>방법일지 및 지출 증빙서류</u> 7. <u><삭 제></u> 8. <u>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u> <p>② (현행과 같음)</p>

관 계 법 령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